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CISG)에서 매도인의 서류교부의무\*

A Study on the Seller's Obligation to Hand over Documents under the CISG

허은숙(Eun-Sook Huh)

건양대학교 글로벌경영학부교수

## 목차

- |                              |          |
|------------------------------|----------|
| I. 서론                        | V. 결론    |
| II. 매도인의 서류교부의무에 관한 규범       | 참고문헌     |
| III. 서류교부의무의 이행기준과 원칙        | ABSTRACT |
| IV. 서류교부의무의 위반에 대한 매수인의 권리구제 |          |

## 국문초록

본 연구는 매도인의 서류교부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CISG의 제30조와 34조의 내용을 무역관습인 Incoterms 및 신용장통일규칙(UCP)과 관련하여 해석하고, 서류교부의무의 위반이 매수인에게 어떤 법적 구제권을 부여하는지를 규명한다.

CISG는 제30조와 34조에 매도인의 서류교부의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서류의 종류, 서류교부 시기, 장소, 형식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율하지 않고 계약 및 관습(usage)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계약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경우 Incoterms와 신용장통일규칙이 협약을 보완하여 적용된다.

매도인이 계약에 적합한 서류를 정해진 시기, 장소, 형식에 따라 교부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협약의 제45조에 의해 이행청구권, 계약해제권 및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구제권이 매수인에게 부여된다. 그러나 계약해제권의 경우 협약이 계약의 유지를 기본 정신으로 하고 있으므로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경향이 있다.

주제어 : CISG, 제30조, 제34조, 서류교부의무, Incoterms, UCP

\* 이 논문은 2010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0-327-B00349)

## I. 서론

오늘날 대부분의 국제물품매매계약은 격지거래이자 서류거래(documentary transaction)<sup>1)</sup>라는 특성을 지닌다. 매매계약 당사자들의 일차적인 관심대상은 물품이겠으나 매도인의 의무는 계약에 적합한 물품만 제공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품에 관련된 서류를 계약에서 합의한 대로 교부하여야만 완전한 의무이행이 된다.<sup>2)</sup> 국제물품매매의 구조를 보면 하나의 거래에서 물품뿐만 아니라 이를 대체 혹은 보완하는 서류들도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매수인이 최종 실수요자가 아니라 중간상일 때는 서류자체가 거래의 실제 목적물이 되기도 한다.<sup>3)</sup>

서류의 기본적인 역할은 물품의 명세 즉 성분, 품질, 수량, 포장상태, 원산지 등 물품의 제반 속성을 나타낼 뿐 아니라 매도인이 계약적 의무를 이행했음을 입증하는 데 있다. 여기에 더하여 어떤 서류(예컨대 선하증권)는 운송중 물품의 권리를 자유롭게 전매하고자 하는 당사자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물품에 대한 소유권을 표창한 권리증권(document of title)<sup>4)</sup>의 지위도 확보하고 있다. 격지거래의 특성상 상당한 운송기간이 소요되는 국제물품매매에서는 당사자들이 이 기간 동안에도 관련서류를 이용하여 물품을 계속적으로 처분하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무역금융을 사용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은 물품의 계약일치성을 증명하는 서류로 기간 동이 수출대금채권을 행사하는 데 중요한 수단이 되며, 선하증권은 물품의 상징(symbol)으로 매수인이 도착화물을 인수하는데 필수적인 서류가 되고 있다.<sup>5)</sup>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의 제30조와 제34조에서 매도인의 물품인도의무와 함께 서류교부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도 대부분의 국제물품매매에서 이처럼 서류가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 1) 본고에서의 '서류거래'란 CISG의 자문위원회의 정의에 따라 매도인이 물품인도의 증거로 서류를 제공하는 거래를 의미한다. 서류인도조건으로 발달한 CIF조건은 전형적인 서류거래라 할 수 있으나 이 외에도 매도인의 의무로 상업송장과 운송서류 등의 서류가 제공되어야 하는 거래는 모두 넓은 의미의 서류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2)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의 제 30조는 매도인의 물품인도의무와 서류인도의무를 동등하게 병기하고 있다.
- 3) Peter Schlechtriem, "The Seller's Obligations Under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Galston & Smit ed., International Sales: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Matthew Bender (1984), Ch. 6, pages 6-17); Cf. the Vienna Conference discussions in connection with the passing of risk. A/Conf.97/C.1/SR 32 p. 9.
- 4) 권리증권은 증권의 소지자에게 물품의 소유를 증명하고 수취, 보유, 처분권을 주는 서류로 선하증권(Bill of Lading), 창고증권(Warehouse Receipt 혹은 Warehouse Warrant, 부두증권(Dock Warrant 혹은 Dock Receipt)등이 이에 해당한다.
- 5) L/G(수입화물선취보증서)제도에 의해 선하증권의 원본없이도 통관이 가능하겠으나 이는 하주의 편의를 도모하는 편법적 관행으로 운송인은 선하증권 원본 소지인이 화물인도를 요구할 경우 대항하기 어렵다.

매도인은 매매계약에 적합한 물품을 시기, 장소 및 방식을 준수하여 인도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물품을 매수인이 인수하고 처분하는데 필요한 운송서류 및 부대서류를 물품관련서류로서 계약에서 정한 대로 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매도인의 서류교부의무는 어떤 서류를(서류적합성의 문제), 언제(제공시기), 어디서(제공장소), 어떤 형식으로 제공해야 하는가의 문제로 집약된다.

협약은 제30조와 34조에 매도인의 서류교부의무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나 서류의 종류, 서류교부를 하는 시기, 장소, 형식 등에 대해 별도로 명시하지 않고 다만 계약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만일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계약의 해석(제8조), 관습(usage)<sup>6)</sup>(제9조) 그리고 필요하다면 본 협약의 일반원칙에 의해 해석해야 한다.<sup>7)</sup> 관습의 경우, Incoterms<sup>8)</sup>는 각 조건에서 서류를 제공해야 할 매도인의 의무<sup>9)</sup>와 이를 인수해야 할 매수인의 의무<sup>10)</sup>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sup>11)</sup> 신용장통일규칙(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신용장통일규칙; 이하 UCP라 한다)도 서류적합성의 기준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어 실무적으로는 이들이 협약과 유기적이고 상호보완적으로 적용될 것이다.<sup>12)</sup>

한편, 지금까지 국제물품매매거래에서 매도인의 서류제공의무와 관련된 문제는 주로 신용장결제에 이루어지는 경우에 있어 신용장조건에 일치하는 서류를 제공할 의무라는 관점에서 다루어져 왔다. 그러나 오늘날 국제거래에서 신용장결제의 비중은 20%이하에 머물고 있어 대부분의 국제무역거래들이 UCP가 적용되지 않는 거래가 되고 있다. 이처럼 대부분의 거래가 비신용장거래이다보니 매도인의 서류적합성 및 서류교부의무와 관련된 문제는 은행과 매도인간의 관계가 아닌 매도인과 매수인간의 직접적인 문제가 되고 있고 그 해석원칙으로서 CISG와 Incoterms가 더욱 큰 의미를 갖게 되었다. 이러한 인식하에서 본 연구는 매도인의 서류교부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CISG의 30조와 34조의 내용이 기존의 무역관습인 Incoterms 및 UCP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를 분명히 하고, 서류교부의무의 위반이 매수인에게 어떤 법적 구제권을 부여하는지를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6) Incoterms와 UCP 등의 국제거래관습이 이에 해당한다.(CISG Advisory Council Opinion No.5, The buyer's right to avoid the contract in case of non-conforming goods or documents, *Nordic Journal of Commercial law*, 2005, #2, para.4.11, 4.15)

7) 김이수,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주석서”, 『법학연구』, 제8권, 2001, p.239.

8) Incoterms는 1936년에 처음 제정된 이래 범세계적으로 계약의 표준으로 수용되었고 국제무역의 발전에 부응하고자 정기적으로 개정되어 왔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것은 Incoterms2010이다.

9) Incoterms 2010 각 조건의 A1, A8 참조.

10) Incoterms 2010 각 조건의 B8 참조.

11) 현장인도조건인 EXW에서는 매도인의 운송인도증명서류 제공의무가 없다.

12) Incoterms의 규정과 CISG 규정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Incoterms가 우선 적용되고 Incoterms에서 규정하지 않은 부분은 CISG에 따라 해결하게 되므로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오원석, 하강현, 『국제물품매매법』, 삼영사, 2004, pp.310-311)

협약에서의 서류교부의무를 Incoterms나 UCP 등의 무역관습과 연계하여 비교한 연구는 이제 시작단계에 불과하다. 외국에서는 매도인의 서류교부의무에 대한 해석보다는 이 의무의 위반이 매수인에게 계약해제권을 주는가 아니면 단순히 손해배상권만을 주는가에 논의가 모아지고 있다.<sup>13)</sup> 또한 이와 관련한 협약의 해석에 있어 국제무역관습을 선도해온 영국의 보통법과 대륙법계간에 충돌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내에서 CISG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법학자들의 연구는 주로 협약의 각 조항에 대한 법리해석에 논의의 중점을 두고 있고, 무역관습과 관련하여 연구한 결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무역상무분야에서는 Incoterms와 UCP의 각 영역에서 서류적합성 내지는 서류일치성문제를 다루는 연구로 진행되어 오다가 최근만을 유르러 제한된 범위내에서 협약과 연계하여 해석이 시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표적으로 허해관은 해상송부매매에서의 운송서류 중 선하증권을 대상으로 국제매매협약상의 서류적합의무를 고찰하고 선하증권의 계약적합성. 대표적 몇 가지의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sup>14)</sup> 윤동희도 CISG를 중심으로 매도인과 매수인사이의 수 있다상의 문제로서 선적서류, 특히 선하증권을 중심으로 표적운송서류의 계약적합성문제를 연구하였고 그 필요표적분석도구로서 Incoterms와 신용장통일규칙, 해상법을 사용하였다.<sup>15)</sup> 이 두 연구는 CISG의 관점에서 서류의 적합성요건을 고찰하기 시작한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 한편, 연구범위를 매도인이 제공해 할 서류의 핵심적인 두가지 유형인 물품의 계약일치성증명서류와 인도증명서류(운송서류)중 ‘운송서류’에 한정하였다는 점에서 물품의 계약일치성 증명서류 및 다양한 운송방식을 포괄하는 운송서류의 적합성문제 등에 대한 후속연구의 여지를 남겼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아직 다루어지지 않은 물품의 계약일치성증명서류의 적합성과 선하증권외에 항공운송서류를 비롯한 다양한 운송서류를 포함하는 보다 일반화된 서류의 적합성 판단기준을 설정하고자 한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류교부의무의 관련조항과 Incoterms(2010), UCP600 등 협약을 보완하는 무역관습의 관련규정을 통합적으로 고찰하여 이들의 적용관계를 정리한다.

제3장에서는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류교부의무의 내용에 대하여 ‘물품관련서류’로서

13) 대표적인 연구로 다음을 참조: Alastair Mullis, "Avoidance for Breach under the Vienna Convention; A Critical Analysis of Some of the Early Cases." (Andreas & Jarborg eds., *Anglo-Swedish Studies in Law*, pp. 326-55, Koji Takahashi, "Right to Terminate (Avoid) International Sales of Commodities", *Journal of Business Law*, Sweet & Maxwell, March 2003.; Peter Schlechtriem, "Interpretation, gap-filling and further development of the UN Sales Convention," *Pace Law School Institute of International Commercial Law* - August 30, 2004.

14) 허해관, "해상송부매매에서 국제매매협약상 매도인의 서류적합의무에 관한 일고찰-선하증권을 중심으로", 『한국무역상무학회지』, 제37권, 2008.

15) 윤동희, "CISG상 매도인의 물품인도의무에 따른 운송서류의 적합성에 관한 연구: 선하증권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교부되어야 하는 서류의 종류와 서류적합성, 서류교부의 시기, 장소 및 형식 등에 관한 규정 내용을 해석한다.

제4장에서는 매도인의 서류교부의무 위반에 따르는 매수인의 권리를 고찰한다. 여기에서는 매수인의 계약해제권행사와 관련한 요건을 규정한 제25조, 매수인의 구제권(remedy)을 규정하고 있는 제45조부터 49조까지의 내용을 집중적으로 고찰한다. 이 조항들은 매수인의 일반적인 구제권에 대하여 특히 물품인도 의무의 위반에 중점을 두고 언급하고 있으나 이들 대부분의 법리가 서류교부의무에 대하여도 유추적용 될 수 있을 것이다. 매수인의 구제권으로서 계약해제권, 손해배상청구권, 하자서류치유청구권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제5장에서는 이상에서 살펴본 내용을 정리하고 연구자의 견해와 함께 후속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과제를 제시하면서 결론을 맺는다.

## II. 매도인의 서류교부의무에 관한 규범

### 1. CISG의 서류교부의무

협약은 제30조에 물품인도 의무와 함께 서류를 교부해야 할 매도인의 의무, 물품의 소유권 이전의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sup>16)</sup>

“매도인은 계약과 이 협약에 따라 물품을 인도하고 관련서류를 교부하며 물품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The seller must deliver the goods, hand over any documents relating to them and transfer the property in the goods, as required by the contract and this Convention.)“

즉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물품관련서류 교부의무는 물품인도 의무 및 당해 물품의 소유권 이전의무와 함께 매도인이 이행해야 할 핵심적인 의무임을 알 수 있다.

또한 협약의 제34조는 앞의 30조에 규정된 서류교부의무가 어떻게 이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좀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매도인이 물품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여야 하는 경우, 매도인은 계약에서 정한 시기, 장소 및 형식에 따라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매도인이 교부하여야 할 시기 전에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불합리한 불편 또는 비용을 초래하지 않는 한 계약에서 정한 시기까지 서류상의 부적합을 치유할 수 있다. 다만 매수인은 이 협약에서 정한 손해배상을

16) CISG Article 30.

청구할 권리를 보유한다.”(If the seller is bound to hand over documents relating to the goods, he must hand them over at the time and place and in the form required by the contract. If the seller has handed over documents before that time, he may, up to that time, cure any lack of conformity in the documents, if the exercise of this right does not cause the buyer unreasonable inconvenience or unreasonable expense. However, the buyer retains any right to claim damages as provided for in this Convention. )

제34조의 제1문에 따르면 매도인은 계약서에 명시되거나 계약조건으로 존재하는 경우 혹은 서류매매(documentary sale)<sup>17)</sup>인 경우 서류교부의무를 부담한다. 그리고 이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이행시기, 이행장소 및 서류의 형식 등이 계약에 일치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계약에서 서류제공에 관하여 특별한 언급이 없을 경우에는 거래관습이나 신의성실원칙이 적용됨을 시사하고 있다.<sup>18)</sup> 거래관습이 없다면 신의성실원칙<sup>19)</sup>에 따라 매수인이 물품도착시 운송인으로부터 이를 취득하고 통관하는데 필요한 형식적 서류를 매도인이 제공해야 할 것이다.<sup>20)</sup>

제34조의 제2문은 매도인이 정한 시기 이전에 서류를 인도한 때에는 그 시기까지 서류상의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그 권리의 행사로 매수인에게 불합리한 불편 혹은 비용을 초래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은 이 협약에 의해 보장된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sup>21)</sup>

이 규정은 하자있는 서류인도에 대하여 매도인의 치유권이 제37조에 규정된 물품하자의 치유권과 같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sup>22)</sup> 서류가 법적요건이나 내용과 관련하여 계약조건과 불일치할 때 만일 매도인이 계약에서 합의된 시기 이전에 불일치서류를 제공했다면 그는 이것이 매수인에게 불합리한 불편이나 비용을 유발하지 않을 경우 합의된 시기이전

17) 국제무역에서 가장 전형적인 거래조건인 CIF조건은 선적물품의 증권화와 이를 중심으로 한 선적서류에 의한 계약의 이행을 절대적으로 하고 있으며 현대무역에서 또 하나의 주류를 이루는 FOB조건은 본래 현물인도조건이지만 선적지 또는 수출지에 아무런 연고를 갖지 않는 매수인이 본선인도조건계약을 성립시킨 경우에 선박회사와의 운송계약을 비롯하여 선박의 수배에서 운송증권의 입수까지 매도인에게 의뢰하여 행하며 이렇게 얻은 선적서류를 담보로 외국환거래은행에 환환어음을 매입하게 하는 특약을 맺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므로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국제화환에 의한 무역결제의 방법으로 물품의 인도 대신 상징적 인도인 서류제공방식을 채택하여 ‘선적서류의 수수’에 의하여 의무행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윤동희, 전제논문, p.31)

18) 오원석, “UN통일매매법(CISG)에서 국제무역관습의 수용여부에 관한 고찰,” 『무역상무연구』, 제37권, 한국무역상무학회, 1999.2. p.188.

19) CISG 제7조 제1항:“협약의 해석에 있어, 협약의 국제적인 성격과 그 적용상의 통일성의 증진을 위한 필요성 및 국제무역상의 신의성실의 준수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20) 윤동희, 전제논문, p.32.

21) CISG, Article 34. 제2,3문.

22) Lando, Bianca-Bonell Commentary on the International Sales Law, Giuffrè: Milan, 1987, p.266.

에 그러한 결함을 치유(cure)할 권리를 갖는다. 그러나 이 조항의 마지막 문에서는 매수인이 매도인의 그러한 치유에도 불구하고 어떤 손해(damages)를 입은 것이 있다면 매수인은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4조의 2,3문에서 매도인의 치유권은 의무불이행시 자기비용으로 치유할 수 있는 48조의 권리와 같은 것이다.<sup>23)</sup>

이처럼 협약의 34조는 “매도인이 물품에 관련하여 서류를 교부할 의무가 있을 때” 적용되지만 언제 서류가 교부되어야 하는지 또한 제공해야 할 서류가 어떤 것인지는 정의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이 협약의 의도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 1939년과 1956년의 초안으로 여기에서는 매도인이 관습에 따라 물품관련서류를 매수인에게 제공할 의무를 규정하면서 이를 합리적인 근면함으로 그리고 가능한 신속하게 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sup>24)</sup>

따라서 이 점에 관하여는 계약에 일반적으로 포함되는 Incoterms의 가격-인도조건, 즉 무역거래조건이 어떤 서류가 제공되어야 하는지를 규정한다고 볼 수 있다.<sup>25)</sup> 사실 어떤 서류를 어느 정도로 제공해야 하는가는 전적으로 계약에서 정할 문제이다.<sup>26)</sup> 예컨대 CIF조건에서 요구되는 서류들은 무고장의 유통성 선하증권, 선적물품에 대한 송장, 보험증권, 원산지증명서 등이 될 것이다.<sup>27)</sup>

계약에서 특별히 약정한 바 없어도 매도인의 서류제공의무는 매도인의 위험부담과 비용으로 매수인에게 서류를 송부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sup>28)</sup> 이는 서류의 제공의무는 매수인이나 그 대리인이 실제 서류의 점유를 취득해야 이행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매수인이나 그 대리인이 운송인이 아닌 매도인으로부터 물품을 추심해야 할 경우에는 물품을 목적지국으로 운송하는데 필요한 서류(예컨대 원산지증명서)를 그 기회에 제공할 수 있다.<sup>29)</sup>

23) Peter Schlechtriem, op.cit., pp.6-17.

24) 이 조항은 1964년의 헤이그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계약이나 관습(usage)을 따르도록 하는 언급으로 축소되었다. “Where the seller is bound to hand over to the buyer any documents relating to the goods, he shall do so at the time and place fixed by the contract or by usage (Article 50 of ULIS)”. (Lando, Bianca-Bonelli Commentary on the International Sales Law, Giuffrè: Milan (1987)265-267)

25) UNCITRAL, “2008 UNCITRAL Digest of case law on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http://www.cisg.law.pace.edu/cisg/text/digest-art-34.html>)

26) Peter Schlechtriem, op.cit., pp. 6-17.

27) Lando, Bianca-Bonelli Commentary on the International Sales Law, Giuffrè: Milan, 1987, p.266.

28) P. Huber, Alastair Mullis, *The CISG: a new textbook for students and practitioners*, Sellier. European Law Publ., 2007, p.128

29) 윤동희, 전제논문, p.34.

## 2. Incoterms, UCP 등 무역관습에서의 서류교부의무

### 1) Incoterms 2010

오늘날 대부분의 국제물품매매계약은 ICC에서 제정한 Incoterms의 정형거래조건(trade term)을 사용하여 체결되며 그 중에서도 실무상 CIF, CFR, FOB 등의 거래조건이 주로 사용된다.<sup>30)</sup> 다수의 법원과 학자들은 이들이 CISG의 제9조 (2)항에서 의미하는 국제거래에서의 관습(usage)이 되었으며 이로써 협약의 원칙을 보완하고 있다는 점을 지지한다.<sup>31)</sup> 현행 Incoterms 2010(이하 Incoterms라 부른다)은 11가지 정형거래조건 of 해석규칙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들 11가지의 조건들은 단일 또는 복수의 운송방식에 사용가능한 규칙과 해상운송과 내수로운송에 사용가능한 규칙으로 대별된다. 전자의 경우 EXW, FCA, CPT, CIP, DAT, DAP, DDP가 여기에 속한다. 이들은 해상운송이 전혀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도 사용가능하다. 후자의 경우는 물품의 인도장소와 도착장소가 모두 항구인 점에서 “해상운송과 내수로운송”규칙으로 명명되었다. FAS, FOB, CFR, CIF조건이 이에 속한다.<sup>32)</sup>

Incoterms는 EXW조건을 제외하고 각 조건에 따라 매도인이 제공해야 하는 서류를 규정하고 있다. 제공서류에는 필수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서류와 협조제공서류가 있다. 제1조와 8조는 매도인이 자신의 책임 하에 제공해야 하는 필수서류를, 제2조에서는 매수인의 요청에 의하거나<sup>33)</sup>, 자신의 위험과 비용으로 제공해야 할 서류를 그리고 제10조는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매수인의 위험과 비용부담으로 제공해야 하는 협조서류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sup>34)</sup>

### 2) UCP 600

Incoterms의 정형거래조건은 일차적으로 계약에서 제공되어야 할 서류의 성격을 규정하지만 계약의 대금지불조건이 신용장방식인 경우 어떤 정형거래조건이 사용되었는지를 불문하고 신용장에 명시된 서류가 필수서류로서 가장 우선적인 기준이 된다.

신용장에 의한 대금지급이 매매당사자간에 합의되면 이제 은행이 주요 당사자로서 결제과정에 참여하게 되고 매도인은 매매계약과는 또다른 신용장거래의 원칙에 따라 서류교부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신용장거래는 서류거래이기 때문에 독립·추상성의 원칙<sup>35)</sup>이 적용되고 서

30) 허해관, 전계논문, p. 62.

31) CISG Advisory Council, "CISG Advisory Council Opinion No.5", *Nordic Journal of Commercial Law*, issue 2005, #2, p.10.

32) 대한상공회의소, 「인코텀즈(Incoterms)2010」, 2010, p. 26.

33) EXW조건외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34) Incoterms 2010 각 조건의 A1, A2, A8, A10 참조.

35) 신용장의 독립성은 매매계약에 근거하여 발행되지만 매매계약과 신용장거래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것이며, 추상성



류조건의 불일치는 직접적인 대금지급의 거부사유가 되므로 매도인은 서류가 신용장조건에 엄격하게 일치하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신용장에는 수익자가 대금지급을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할 서류의 종류, 서류의 형식, 서류 제시기일, 제시방법 등을 내용(조건)으로 명시하게 되며 매도인은 신용장의 수익자(beneficiary)로서 이에 일치하는 서류를 준비하여 신용장유효기일내에 신용장에 지정된 방식으로 제출하여야 대금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신용장방식의 결제에서는 CISG의 서류교부의무에 관한 내용이 훨씬 분명해진다.

이렇게 제시된 서류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ICC에서 제정한 UCP이다. 동 규칙에서는 서류가 갖춰야 할 요건에 관하여 제17조에서 제28조에 걸쳐 서류의 원본성, 운송수단별 운송서류의 요건, 상업송장, 보험서류의 요건, 서류검토은행이 서류와 신용장조건과의 일치성을 판단하기 위해 적용하는 원칙과 해석기준 등을 중심으로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 III. 서류교부의무의 이행기준과 원칙

본장에서는 협약의 제30조와 34조에 간단하고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서류교부의무에 대하여 교부서류의 종류와 적합성, 교부시기, 교부장소, 교부형식 등을 중심으로 이행기준과 원칙을 보다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해석하고자 한다.

#### 1. 교부할 서류의 종류와 적합성

협약의 제3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품관련서류’에는 그 소지자에게 물품을 처분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선하증권이나 창고증권, 부두수령증<sup>36)</sup>, 일정한 가치를 갖는 보험증권과 같은 서류들이 있으며, 그러한 권리는 없으나 매수인이 물품의 사용이나 처분을 위해 필요로 하는 상업송장<sup>37)</sup>, 원산지증명서, 중량증명, 품질·분석증명서 등 기타 유사한 서류들이

은 신용장당사자들은 서류로 거래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구종순, 허은숙, 『무역결제』, 박영사, 2006, pp.96-99 참조.

36) 부두수령증(D/R)은 컨테이너선사가 화물의 수령증으로 발행하는 서류로 재래선의 Mate's Receipt(M/R)와 같은 의미를 갖는다.

37) 상업송장은 권리증권은 아니지만 물품이 계약에 합치함을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이다. 특히 송금방식에서는 대금지급에 환어음이 발행되지 않기 때문에 상업송장이 대금청구서의 역할을 한다. 이러한 중요성에 비추어 UCP도 다른 서류에 비해 상업송장에 대해서는 엄격일치를 요구하는 송장중심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포함된다.<sup>38)</sup>

이렇게 볼 때 물품관련서류는 계약에 명시적으로 언급되는 특정의 서류들과 Incoterms의 각 조건에 따라 매도인이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 서류, 그리고 대금결제에 신용장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sup>39)</sup> 등이 될 것이다.

그런데 협약은 물품과 함께 관련서류를 제공해야 할 매도인의 의무만을 규정할 뿐 이들 서류의 종류나 속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언급이 없다. 따라서 계약에 통상 포함되는 Incoterms의 특정 조건이 이를 보완하여 각 조건들에 매도인이 제공해야 할 서류를 구체화하게 된다. Incoterms의 각 조건에 따라 매도인이 제공해야 하는 서류들은 물품의 계약일치를 증명하는 서류, 인도증명서류, 기타 서류로 나눌 수 있다.

### 1) 물품의 계약일치를 증명하는 서류

Incoterms의 각 조건을 보면 매도인의 의무 제1조에 공통적으로 계약물품의 일치성을 증명하는 증명서류로서 상업송장이나 이에 준하는 계약물품의 증명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상업송장은 송부한 물품의 명세서이자 계산서, 대금청구서의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sup>40)</sup> 다른 무역서류와 달리 매도인이 직접 작성하는 서류이다.<sup>41)</sup>

서류의 형태는 종이서류이거나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 전자문서도 허용하고 있어 통신환경의 전자화를 수용하고 있다. 계약물품의 적합성을 증명할 수 있는 직접적인 서류로서의 상업송장 외에도 통상 포장명세서, 품질·성분분석증명서, 원산지 증명서 등 물품의 속성과 상태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서류들이 제공된다. 아울러 물품특성이 정교하고 기술적으로 복잡한 경우 다른 증거로 보아 당사자들이 물품의 테스트과정, 기준 등을 서류화해서 제공하는 것을 묵시적으로 염두에 두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을 때에는 계약에서 특정서류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매도인은 기술적 특성 등을 기록한 서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sup>42)</sup>

### 2) 인도증명서류

38) [GERMANY Bundesgerichtshof 3 April 1996 (Cobalt sulphate case) (certificate of origin and certificate of analysis; see also Secretariat Commentary to (then) article 32, p. 31, para. 2.

39) 신용장에 서류명이 명시되지 않고 조건으로만 나타나는 경우 UCP에 의하면 은행은 이러한 서류는 심사하지 않는다. (UCP 600, Art.13, a)

40) 구종순, 허은숙, 전계서, pp.259-260.

41) 따라서 신용장거래에서 상업송장의 일치성이 문제가 되는 경우 법원은 송장중심주의적 관점에서 다른 서류와 달리 매우 엄격한 일치성을 요구하고 있다.

42) CISG Case Presentation, Arbitration proceeding, 97/2002, Russia, 6 June, 2003.

각 조건의 제 8조에서는 인도가 이루어진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인도증명서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다수의 Incoterms 2010 조건에 있어 이 서류들은 운송서류이거나 그에 상응하는 전자적 기록이다.<sup>43)</sup> 각 규칙 A1/B1에서는 당사자간에 합의되었거나 관습이 있는 경우에 종이서류 뿐 아니라 전자적 형태의 기록이나 절차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sup>44)</sup>

여타의 조건에 비해 매도인이 최소한의 의무를 부담하는 EXW조건에서는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인도서류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

F그룹에 속하는 조건의 경우 물품의 인도를 증명하는 통상적인 서류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러한 서류로는 FAS와 FOB조건의 경우 운임후불조건<sup>45)</sup>의 선적선하증권이나 운임후불조건의 선적을 증명하는 해상화물운송장(sea waybill), 본선수취증(mait's receipt;M/R) 등이 사용될 수 있다. FCA조건의 경우에는 인도가 매도인의 영업장구내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기타의 합의된 장소에서 이루어지므로 인도방식에 따라 화물수취증(waybill) 등을 비롯한 통상의 인도증빙서류가 제공될 수 있다.

C그룹에 속하는 CFR과 CIF조건에서는 매도인이 합의된 목적항까지의 통상적인<sup>46)</sup> 운송서류를 매수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이 서류는 계약물품에 대하여 발행되고 선적을 위하여 합의된 기간내의 일자가 표시되어야 하고 매수인이 목적항에서 운송인에게 물품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다음 매수인에게 그 서류(유통성선하증권)를 양도함으로써 또는 운송인에게 통지함으로써 매수인이 운송중의 물품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들 서류가 여러 통의 원본으로 발행되는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전통의 원본이 제시되어야 한다.

D그룹에 속하는 DAP, DAT, DDP 조건의 경우에는 지정목적항이나 지정목적지에 있는 지정터미널에서 인도를 수령할 수 있도록 화물인도지시서를 비롯한 통상적인 운송서류들이 제공되어야 한다. 여기서 통상적인 운송서류는 예컨대 유통성선하증권, 비유통성 해상화물운송장, 내수로운송서류, 항공화물운송장, 철도화물운송장, 도로화물운송장 또는 복합운송서류 등 운송방식이나 인도형태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43) Incoterms 2010, Introduction.

44) Incoterms 2010, 각 조건의 A1. 매도인의 의무 참조.

45) FOB조건에서 매수인은 운송계약을 수배하며 해상운임을 지불할 의무를 지게 되므로 도착지에서 화물인수시 운임이 지불된다.(Incoterms 2010, 매도인의 의무 제3항 참조)

46) '통상적인(customary)'의 의미에 대해 Incoterms 2000의 서문에서는 많은 경우 거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고 따라서 이러한 관행은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통상적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리적인(reasonable)'이라는 단어보다 더 유용한데 합리적인 개념은 관행의 세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선의와 공정한 거래라고 하는 한층 어려운 원칙에 대한 평가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무엇이 '합리적인'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상술한 이유에 따라 Incoterms에서는 '통상적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리적인이라고 하는 단어보다 일반적으로 선호되어 왔다.(Incoterms 2000, Introduction 6. Terminology, "usual". 참조)

Incoterms의 사용은 운송방식과 밀접하게 연관되기 때문에 운송방식과 불일치하는 거래조건을 사용하는 경우 운송서류의 특성이 Incoterms에서 규정한 요건에 부적합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예컨대 항공운송에 FOB 조건과 같이 해상운송이 의도되어 있는 거래조건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 매도인으로서 FOB 조건하에서 매수인에게 제공해야 할 정당한 서류(예컨대 선하증권, 해상화물운송장 또는 이에 상응하는 전자식 운송서류)를 입수할 수 없게 하여 어려운 입장에 처할 수 있다.<sup>47)</sup> 항공운송의 거래에서 FOB조건을 사용하는 경우 Incoterms 상 매도인이 제공해야 하는 운송서류는 선하증권을 비롯해 해상운송에서 발행되는 운송서류임에 반해, 실제 입수하는 서류는 항공화물운송장(AWB)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만일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경우라면 적합한 서류가 될 수 있으나 비신용장조건이라면 부적합한 서류를 제공하는 결과가 된다.

### 3) 기탁서류

매도인은 매수인이 물품을 수입하는데 필요하거나, 운송중 제 3국의 통과에 필요할 수 있는 서류로서 인도증명서류이외의 서류, 예컨대 원산지 증명서, 무고장 부품증명서, 보건증명서, 검역증명서 등이 매도인 자신이 속한 인도지국가나 원산국 또는 인도지국과 원산국에서만 발급되거나 발송되는 경우에는 이들 서류를 취득하는데 모든 협조를 매수인에게 제공해야 한다.<sup>48)</sup> 특히 물품보안이 국제물류에서 중요한 문제가 되면서 Incoterms 2010에서는 보안관련정보를 제공하거나 그러한 서류와 정보를 획득하는데 협조해야 한다.<sup>49)</sup> 이는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매수인의 위험 및 비용부담으로 제공할 협조제공의무이지만 매도인이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할 의무이며 이 과정에서 매수인이 필요한 서류와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러한 서류와 정보의 획득에 협조하는데 발생한 비용을 매수인에게 상환해야 한다. 한편 CIF계약에서는 상업송장과 운송서류 외에도 해상보험증권이나 보험증명서 등 부보증명서류가 필수서류가 된다.

## 2. 서류교부시기

협약은 교부시기에 대해 별도로 규율하지 않고 이에 대해서는 계약에 의하고<sup>50)</sup> 그 내용에

47) Incoterms 2000, Introduction, 18.

48) Incoterms 2010, 각 조항 매도인의 의무 A8참조.

49) Incoterms 2010 각 조건의 A10.

50) ULIS 제 50조도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Geoffrey Thomas, 김이수, 전계논문, p.238.)

일치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sup>51)</sup> 서류의 종류와 이들 서류를 수반하는 절차의 다양성에 비추어 협약은 계약에서 정한 시기와 방법으로 교부해야 한다는 원칙을 도입할 수 밖에 없었다고 이해된다.<sup>52)</sup>

보통 국제거래에 사용되는 계약서의 양식이나 조항에는 교부시기에 대해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다.<sup>53)</sup> 또는 계약의 주변 상황 예컨대 대금결제조건으로부터 유추할 수 있다.<sup>54)</sup>

Incoterms의 각 조건에는 서류교부시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으나 전형적인 서류매매조건인 CFR, CIF조건은 이에 대하여 다른 조건에서 나타나지 않는 '지체없이(without delay)'란 표현을 하고 있다. 즉 CFR과 CIF조건인 계약에서 매도인은 지체없이 매수인에게 통상적인 운송서류를 제공해야 하고 그 서류는 매수인으로 하여금 운송중인 물품을 당해 서류의 양도에 의해 제2의 매수인에게 처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선적서류제공은 합리적인 기간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매도인은 모든 정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sup>55)</sup> 이러한 규정을 한 이유는 보통 이 조건이 운송중인 물품을 즉시 재매각하는 상황에서 이용될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가격변동과 같은 상황 때문에 시기(time)가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sup>56)</sup>

EXW나 DAP조건에서처럼 계약상 매도인이 특정장소에서 특정기간내에 물품을 매수인이 처분할 수 있는 상태로 두어 인도해야 하고 매수인이 물품을 인수하기 위해 서류가 필요한 경우 매도인은 특약이 없더라도 매수인의 인도기간내의 물품수취를 가능하게 하는 최종 시점까지는 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계약이 물품의 운송을 포함한 경우에는 매수인이 물품의 점유를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운송서류는 늦어도 물품의 도착과 동시에 도달할 수 있도록 물품의 발송후 제공되어야 한다. 유사하게 만일 매수인이 특정일에 물품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도인의 의무라면 매수인이 그 특정일에 물품을 임의처분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내에 앞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sup>57)</sup>

신용장이 개설되는 경우에는 명시된 서류제시기일이 있거나 또는 신용장의 유효기일로부터 간접적으로 도출할 수 있다.<sup>58)</sup> 결제가 지급(payment), 인수(acceptance), 매입(negotiation)의

51) ICC 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 Award 7645 of March 1995, Crude Metal Case 참조.

52) Peter Schlechtriem, op.cit., Ch. 6, pp. 6-17.

53) 김이수, 전개논문, p.239.

54) P. Huber, Alastair Mullis, The CISG: a new textbook for students and practitioners, Sellier. European Law Publ., 2007, p.128. 예컨대 특정일에 D/P결제방식을 요구하는 경우 그 날이 서류가 교부되어야 하는 날이 될 것이다.(Toepfer v. Lenersan Poortman N.V.[1980] 1 Lloyd's Rep. 143)

55) Barber v. Taylor (1839 9. L.J. Ex.21.(박대위, 「무역사례(II)」, 법문사, 1987, p.215)

56) Benjamin K. Leisinger, Fundamental Breach Considering Non-Conformity of the Goods, Sellier. European Law Publishers, München, 2007, p.151.

57) 윤동희, 전개논문, p.33.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든<sup>59)</sup> 신용장하에서는 신용장에서 지정된 기일내에 해당은행에 서류를 제시하게 되기 때문이다.

반면에 송금방식(O/A나 T/T)과 같은 비신용장방식의 경우에는 Incoterms의 각 계약조건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Incoterms의 C그룹의 조건에서 ‘지체없이’ 제공할 의무를 제외하고는 특별히 서류제공시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결제방식이 비신용장방식인 경우에는 향후 해석상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당사자들이 구체적인 시기를 합의할 필요가 있다.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매도인이 합리적 기간 내에 서류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 CISG의 일반원칙이라 볼 수 있다.<sup>60)</sup> 계약이나 상황에서 서류가 제공되어야 하는 시기를 유추하기 어려울 때에는 물품이 선적된 후 가능한 한 즉시 매도인은 서류제공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되고 있다. 이것은 영국법<sup>61)</sup>과 UCC<sup>62)</sup>가 취하고 있는 입장이다.

CISG에서는 매도인이 서류가 제공되어야 할 시한 전에 불일치서류를 제공했다면 그 치유가 만기일까지 이루어지고 매수인이 그로 인해 부당한 불편이나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하여 매도인으로 하여금 일치성의 결여를 치유하도록 허용한다.<sup>63)</sup>

### 3. 서류교부장소

서류교부장소에 대해 명시된 장소가 있는 경우 매도인은 그 장소에서 교부해야 한다. 특별히 합의된 장소가 없으면 계약에 사용된 Incoterms나 지불방식에 언급한 것과 같이 계약의 상황으로부터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sup>64)</sup> 예컨대 DAF조건의 경우 국경의 지정된 장소에서 물품의 인도에 관한 통상적인 서류나 기타의 증빙을 매수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58) UCP600 제6조 서류제시의 유효기일 및 장소(Availability, expiry date and place for presentation)에 의하면 모든 신용장에는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을 위하여 서류를 제시할 수 있는 유효기일과 장소를 명시하여야 한다. 유효기일과 별도로 서류제시기일이 명시되는 경우에는 각각이 효력을 갖기 때문에 어느 것이든 먼저 도래하는 것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59) 신용장의 대금결제형태는 지급(payment), 연지급(deferred payment), 인수(acceptance), 매입(negotiation)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구중순, 허은숙, 전계서, pp.106-114 참조.

60) Müller-Chen, Commentary on CISG Article 34, in Peter Schlechtriem & Ingeborg Schwenzer, editors, *Commentary on the UN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CISG)*, Second(English Edition), Oxford, 1998, p.404(윤동희), p.33에서 재인용

61) C. Sharpe & Company Ltd. v. Nosawa [1917] 2 K.B.814

62) UCC s-230-(2)(e)는 ‘상업적 신속함(commercial promptness)’을 가지고 서류가 제공되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표현은 ‘합리적인 시간(reasonable time)’보다 더 신속한 행동의 필요성을 표현한 것이다.

63) ICC Court of Arbitration, Award 9117 March 1998 (Goods case)©Pace Law School Institute of International Commercial Law - Last updated June 11, 2009.

64) U. Huber/Widmer, in Schlechtriem/Schwenzer, Commentary, Art.34, para.3;김이수, 전계논문, p.239.

서류교부장소는 특히 대금의 지불조건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화환신용장이 개설되는 경우 매도인이 신용장발행은행이나 지정된 지급은행의 영업소에서 제공하게 될 것이다.

환어음이 은행을 경유하여 대금이 추심되는 경우(예컨대 D/A, D/P방식의 경우이다)에는 수출지의 서류송부은행(remitting bank)이 서류제공장소가 될 것이다. CAD에서는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급장소로 특정 은행을 지정했으면 서류제공장소는 그 은행의 영업소이다. 매도인이 서류송부 및 대금수취를 위해 이용하는 은행은 서류제공의무의 이행에 관하여 매도인의 이해보조자이다. 매도인은 제공장소로 서류를 송부함에 따른 위험과 비용을 부담한다.

송금방식에서는 매도인이 직접 매수인에게 서류를 송부하게 된다. 이 경우 보통 매도인은 특송업체나 우편을 이용해 무역서류를 매수인에게 보낼 것이므로 서류제공장소가 특별히 구체성을 띠기 어렵기 때문에 상황에 따른 사실문제로 보아야 할 것이다.

#### 4. 서류교부형식

협약의 제34조는 서류의 교부장소, 시기와 함께, 교부형식이 계약에 일치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sup>65)</sup> 서류의 형태는 특약이 없는 한 계약에 사용된 정형거래조건과 밀접한 관련을 갖게 된다. 이는 서류의 외관, 기재내용, 교부형식 등의 문제라는 점에서 서류의 적합성<sup>66)</sup>과도 관련된다.

만일 계약이나 거래관습 혹은 당사자사이의 관행들이 서류의 특정 형식을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물품이 목적지에 도착하였을 때 매수인이 운송인으로부터 물품을 인수받을 수 있고, 수입통관을 가능하게 하며 운송인과 보험사에 대하여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sup>67)</sup> 이 경우 서류는 기본적으로 각 서류의 명칭과 용도에 부합하는 정규성(正規性)과 상태성(常態性)을 갖추어야 하며 특히 운송서류는 원본이어야 할 것이다. 정규성과 상태성의 개념은 다소 모호하기는 하지만 기존의 판례<sup>68)</sup>에서 해석된 상황을 볼 때 해당 서류에 그 명칭과 기능에 부합하는 법적, 관습적 기재 요소나 기재항목을 모두 갖추었는지, 통상적으로 해당 서류가 갖추고 있는 외관, 모양을 갖추었는지, 사회통념상 정상적으로 작성된 상태라고 볼 수 있는지<sup>69)</sup>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즉 서류가 외관상 그 명칭이나 속성에 부합하는 내용과 형식을 갖추고 있으면 정규성과 상태성을 갖춘 것이라 하겠다.<sup>70)</sup>

65) CISG Article 34.참조

66) 서류의 적합성에 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윤동희, 전계논문 및 허해관, 전계논문을 참조.

67) Secretariat Commentary(UN DOC. A.CONF.A/97/5), article 32, p. 31, para. 3.

68) 대법원 1980년 1월 15일 선고 78다 1015 참조.

69) 이 개념을 인용하여 판결한 서울고등법원 2001년 6월 22일 선고 2000 나34961의 판결내용 참조.

예를 들어 항공화물운송장에 운송인의 서명이 없다면 정규성과 상태성을 갖춘 서류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sup>71)</sup>

교부할 서류가 지시식증권<sup>72)</sup>이라면 매도인은 배서에 의해 교부해야 하는 바, 배서는 최초에 교부받은 권리자의 배서로부터 연속적인 배서에 의해 매수인이 정당한 권리자임을 인정할 수 있는 형태로 되어야 할 것이다. 매도인이 유통성(negotiable) 서류를 교부할 의무가 있는지의 여부는 계약이나 관습에 의해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창고에 보관중인 물품은 창고관리인에 대한 단순한 인도지시의 방법(예를 들어 인도지시서)으로 인도될 수 있다. 이 때 서류형태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종이서류대신에 전자메시지(EDI message)로 제공될 수도 있다.

## IV. 서류교부 의무의 위반에 대한 매수인의 권리구제

### 1. 개관

매도인이 정해진 시기, 장소, 형식에 의한 서류교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법적 효과는 제45조에서 규정하는 구제권의 규정에 의해 통상적인 매수인의 구제가 적용된다.<sup>73)</sup> 여기에는 매수인의 이행청구권(하자서류치유청구권), 계약해제권 및 손해배상청구권 등이 포함된다.<sup>74)</sup> 이러한 구제권들은 논리적으로 양립가능한 한도 내에서 경합적으로 병존하며 그 중에서 어느 구제권을 행사할지의 선택권은 매수인이 갖는다. 다만 손해배상청구권은 중복구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한도로 다른 구제권과 병행하여 행사할 수 있고 나아가 다른 구제권과는 달리 원칙적으로 모든 계약위반에 대하여 인정된다.<sup>75)</sup> 이러한 매수인의 여러 구제권 중 계약해제권을 제외한 다른 구제권에 대하여는 별다른 논란이 없으나 계약해제권과 관련해서는 전통적인 서류매매관습에서 확립되어온 엄격일치성의 원칙과 거래의 효율과 계약유지를 중시하는 협약의 입장간에 충돌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매수인의

70) 정규성과 상태성의 개념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서류의 효력에 관한 은행의 면책을 규정하고 있는 UCP600의 제34조를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조항에는 서류의 형식, 충분성, 정확성, 진정성, 위조, 법적 효력, 서류에 기재된 조건 등의 표현을 하고 있다.

71) <http://cisgw3.law.pace.edu/cases/060900c4.html>. 참조

72) 예컨대 선하증권은 발행형태에 따라 지시식(to order) 혹은 기명식(straight)으로 발행될 수 있다.

73) [GERMANY Bundesgerichtshof 3 April 1996 (Cobalt sulphate case)]

74) 오원석, 하강현, 「국제물품매매법」, 박영사, 2004, pp.152-153.

75) 윤동희, 전계논문, p.117.



계약해제권과 손해배상권을 중심으로 매도인의 서류교부의무위반의 효과를 논하기로 한다.

## 2. 계약해제권

### 1) 예제요건

협약에 따르면 매도인의 계약불이행이 있다 하여도 그것이 비본질적인 위반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제25조에서 의미하는 본질적(fundamental)인 경우에 해제할 수 있다. 당사자 일방의 계약위반은 그 계약에서 상대방이 기대할 수 있는 바를 실질적으로 박탈할 정도의 손실을 상대방에게 주는 경우에 본질적인 것으로 된다.

계약위반은 매매계약에 속하는 모든 종류의 의무위반을 포함하고 그 의무가 주된 의무인지 부수적 의무인지를 구별하지 않는다. 다만 부수적 의무위반의 경우에는 계약위반이 본질적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구비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울 것이다.<sup>76)</sup> 기존의 판결을 통해 볼 때 본질적 계약위반의 성부는 의무위반의 경중, 하자의 보완가능성 및 다른 방식으로의 활용가능성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근래의 판례도 이와 유사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sup>77)</sup>

### 2) 서류교부의무의 본질적 위반

CISG 하에서 물품과 서류에 관한 매도인의 의무는 별개이다. 따라서 물품이 계약에 적합하더라도 서류교부의무에 대한 본질적인 위반이 있는 경우 매도인은 계약해제권을 갖는다. 이 때 서류교부의무의 본질적 위반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중추적인 것은 그 위반이 상대방에게 계약하에서 기대할 수 있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빼앗는 결과를 낳았는지를 물음으로써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sup>78)</sup> 이 때 피해 당사자의 기대는 계약의 형태, 상업적 배경 및 계약의 모든 조건을 객관적으로 고려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법원은 서류교부의무가 본질적 계약위반에 해당하는가를 판단함에 있어 당해 문서의 종류, 기능을 중요하게 고려한다. 예컨대 권리증권이나 그와 상환으로 매매대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문서를 교부하지 않았거나 혹은 그 문서가 계약과 내용상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인정된다.<sup>79)</sup> 또한 문서자체의 지위보다 ‘서류하자의 특성’이 중요하다. 이

76) 석광현,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CISG)상의 본질적 계약위반”, 『법학논총』, 제23집, 제2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06, p.444.

77) 김진우, 전계논문, p.139.

78) CISG Article 25 참조.

79) Audiencia Provincial de Barcelona CISG- online Nr. 1324(김진우, 전계논문 p.138에서 재인용)

에 따라 권리증권인 선하증권과 달리 보험증명서, 검사증명서, 세관증서 및 원산지증명서와 같은 부수적인 서류에 있어서는 매수인이 물품의 활용에 제한을 받는가의 여부 혹은 매수인이 스스로 그 문서를 용이하게 조달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하자의 경중이 달라질 수 있다.<sup>80)</sup>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독일연방법원에서 다루어진 Cobalt Sulphate 사건<sup>81)</sup>이다. 이 사건에서 매도인은 계약에 일치하는 물품을 인도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하자있는 원산지증명서와 품질분석증명서를 제공했다. 품질증명서에 관하여 계약에서는 4부를 요구했는데 한부만이 제공되었고,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계약에서는 물품이 영국(UK)산임을 나타내는 것을 요구했는데 원산지증명서에는 원산지가 EEC로 기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물품은 실제로는 남아프리카공화국산이었다) 이러한 하자에 대하여 법원은 본질적인 위반이 없다고 판결하였다. 서류상의 하자는 매수인이 계약하에서 기대했던 것을 본질적으로 박탈당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데 이것은 서류만 갖고 불일이 아니라 매수인이 그것을 취득하여 물품을 판매할 수 있는 올바른 서류를 취득할 수 있었는지의 여부도 고려되어야 하는 바 매수인은 현지에서 적합한 서류를 스스로 입수하였다는 점, 문제가 된 원산지 증명서는 후속판매와 가공에는 무관한 서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결국 계약에서 매수인의 이익을 해한 것이 없다는 이유로 법원은 매도인이 서류교부의무를 본질적으로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은 협약하에서 하자서류제공의 본질적인 위반여부와 관련하여 많은 논란을 낳았다.<sup>82)</sup> 이러한 논리는 영국의 보통법에 기반하여 발달해 온 CIF와 같은 서류매매의 전형적인 관행과는 많은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sup>83)</sup> 1978년의 협약초안<sup>84)</sup>에 대한 사무국의 주석(Secretariat's Commentary)도 '본질적 위반'의 개념이 서류매매의 관행에서 떨어져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sup>85)</sup> 따라서 매매당사자들은 필요한 경우 서류와 관련해서 특정조건을 위반한 경우 매수인으로 하여금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도록 하는 명시조항을 둬으로써 해당 조항의 불이행을

80) BGH CISG online Nr.135.

81) Germany 3 April 1996 Supreme Court (Cobalt sulphate case) ;<http://cisgw3.law.pace.edu/cases/960403g1.html>

82) 특히 전통적으로 서류매매관습을 확립해온 영국계 보통법계에서 이러한 관점에 대한 비판이 강한 것 같다. 이 판결에 대한 논란은 Alastair Mullis, "Avoidance for Breach under the Vienna Convention; A Critical Analysis of Some of the Early Cases."(Andreas & Jarborg eds., Anglo-Swedish Studies in Law, Lustus Forlag (1998), pp.345-350을 참조.

83) 이는 협약이 실질주의적이고 효력을 증시하는 대륙법계의 관점을 반영하고 있어 전통적인 형식성을 증시하는 영국의 보통법과의 간극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84) Commentary on the 1978 Draft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UN DOC. A/CONF. 97/5).

85) 위 초안의 제 45조, para.7. 주석은 "매수인이 통상 계약의 본질적인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원칙은 CIF와 다른 서류매매에서의 전형적인 관례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서류거래(documentary transaction)에서는 매도인이 제시하는 서류들이 계약과 엄격하게 일치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기 때문에 매수인은 서류에 어떤 불일치가 있는 경우 그것이 그다지 실제적 중요성을 갖지 않는다 하더라도 서류를 거절할 수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고 있다.

본질적인 위반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 3) CISG 자문위원회(CISG Advisory Council)<sup>86)</sup>의 견해

협약은 계약에 불일치하는 서류의 제공에 대한 매수인의 해제권 행사에 본질적 위반이라는 제한을 둠으로써 영국 계약법학자들로부터 법적 안정성을 약화시키고 불확실성을 야기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sup>87)</sup> 이러한 비판에 대한 CISG자문위원회의 견해는 향후 이 쟁점과 관련하여 계약의 본질적 위반여부가 어떤 상황에서 성립할 수 있는지를 예측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위원회는 기본적으로 보통 매매계약에 수반하는 부대서류들인 경우와 매매계약에서 권리증권의 인도를 요구하는 경우로 상황을 구분하여 달리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화환신용장거래와 1차산품거래 등 특수한 거래상황에 따라 달리 판단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각 상황에 따라 어떤 판단기준이 제시되고 있는지를 서술한다.

#### (1) 부수적인 서류

제34조에서 의미하는 ‘서류’는 소지자에게 물품에 대한 통제권을 주는 서류와 보통 매매계약에 수반하는 서류들로 구분된다.

부수적인 서류는 예컨대 보험증권, 원산지증명서, 검사증명서, 통관증명서 등이 있다. 이들 서류는 물품의 소유권이나 권리를 나타내는 서류는 아니지만 사고발생시의 보험금수령, 수입통관 등에 중요한 서류들이다. 이들 서류에 대해서는 위반시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가는 본질적 위반에 대한 협약의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sup>88)</sup> 즉 그 하자서류로 인해 매수인의 계획이 지장을 받거나 혹은 그가 스스로 어려움없이 무고장 서류를 확보할 수 있는가 등이 본질적인 위반여부의 판단에 고려될 것이다.<sup>89)</sup> 불일치서류가 제공되었다 해도 만일 매수인 자신이 어려움 없이 발급자로부터의 정확한 서류를 요청함으로써 하자를 쉽게 치료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본질적인 계약위반을 구성하지 않는다.<sup>90)</sup>

86) CISG Advisory Council Opinion No. 5, “The buyer’s right to avoid the contract in case of non-conforming goods or documents”, 7 May 2005, Badenweiler (Germany). CISG 자문위원회는 Pace University의 The Institute of International Commercial Law 와 London University 의 The Centre for Commercial Law Studies가 만든 민간협력체제로 CISG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통일적인 해석을 촉진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87) Alastair Mullis(1998), A.G. Guest, Benjamin’s Sale of Goods, (Sweet & Maxwell, 4th edition, 1992, ch.19.

88) BGH, 3 April 1996, CISG-online 135, BGHZ 132, 290 et seq.

89) BGH, 3 April 1996, CISG-online 135, BGHZ 132, 290 et seq. 참조. 법원은 매도인이 현지 상업회의소로부터 쉽게 새 원산지증명서를 확보할 수 있었고 매수인 측 전문가가 작성한 증명서가 유효한 새 품질증명서라고 판결하였다.

90) Id.

## (2) 서류매매계약(Documentary Sales Contract)

서류매매계약에서는 권리증권인 선하증권, 부두증권(dock warrants나 dock warehouse)<sup>91)</sup>, 창고증권(warehouse receipts) 등의 교부에 의한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Incoterms2010의 제 조건 중 EXW를 제외하고 다른 조건에서는 모두 권리증권이나 화물의 처분권을 주는 서류를 제공할 매도인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류매매계약이 될 수 있다.<sup>92)</sup>

이러한 서류매매에서는 매도인의 물품인도의무가 물품관련서류를 교부하는 의무로 대체된다. 이 경우 무고장(clean)서류의 제공은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 요소이며 서류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하자서류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불일치하거나 하자있는 물품을 인도한 경우와 같이 계약위반에 해당하여,<sup>93)</sup> 매수인의 거절권을 의미한다.<sup>94)</sup> 그러나 매도인이 계약의 이행시기내에 서류의 불일치성을 치유할 수 있다면 본질적인 계약위반이 되지 않는다.<sup>95)</sup>

## (3) 화환신용장(Documentary Credits)거래

많은 국제매매계약에서 당사자들은 보증신용장(standby credit)을 포함하여 화환신용장에 의한 지불을 약정한다.<sup>96)</sup> 신용장거래는 은행이 핵심당사자로서 독립추상성의 원칙에 따르게 되므로 서류의 엄격이행이 요구된다.<sup>97)</sup>

신용장거래의 경우 명시적 언급에 의해 혹은 CISG의 제9조 (2)항에서 의미하는 거래관습(trade usage)으로서 UCP600<sup>98)</sup>이 적용된다.<sup>99)</sup> 계약에서 화환신용장에 의한 지불을 요구하고 있으면 제시되는 모든 서류가 “무하자”(clean)이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권리를 갖는다.<sup>100)</sup>

91) 부두증권은 부두소유자가 발행하는 증권으로 소지자가 수입되는 물품 및 부두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물품에 대하여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는 문서이다.

92) Ingeborg Schwenzer, “The Danger of Domestic Preconceived Views with Respect to the Uniform Interpretation of the CISG: The Question of Avoidance in the Case of Nonconforming Goods and Documents”, *Victoria University of Wellington Law Review*, 36:4 (2005), p.805. 송부매매에서는 운송서류의 인도로 인도의무가 완료되므로 송부매매는 서류매매라 할 수 있다)

93) Maartje Bijl, “Fundamental Breach in Documentary Sales Contracts, The Doctrine of Strict Compliance with the Underlying Sales Contract”, *European Journal of Commercial Contract Law* (1/2009), p.23.

94) Ingeborg Schwenzer, op cit. p.805.

95) CISG Advisory Council Opinion No.5, The buyer's right to avoid the contract in case of non-conforming goods or documents, *Nordic Journal of Commercial law*, 2005, #2, p.3.

96) ICC Homepages: <[http://www.iccwbo.org/home/documentary\\_credits/documentary\\_credits.asp](http://www.iccwbo.org/home/documentary_credits/documentary_credits.asp)>

97) 신용장거래에서 서류의 일치성을 판단함에 있어 엄격일치(strict compliance)의 원칙과 상당(실질)일치(substantial compliance)의 원칙이 있으나 상당일치의 원칙도 서류기재내용에 대한 해석에 대한 엄격성의 차이를 의미하지 서류이외에 사실적 정황을 고려하여 서류의 신용장조건 일치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즉 어떤 입장을 취하든 신용장의 독립 추상성에 의해 일치성의 해석에 사실적 정황이 개입되는 것은 배제된다.

98) 2006 Revision, ICC Publication No.600.

99) CISG Advisory Council Opinion No.5, para.4.15.

100) Art 7.3.1, Official Comment to UNIDROIT Principles 2004, 3b.

UCP 600의 제27조에 따르면 ‘무하자’서류는 ‘물품 또는 포장의 하자상태(defective conditions)를 명시적으로 선언하는 조항 또는 부기가 없는’ 운송서류를 말한다. 이러한 엄격이행원칙의 필요성은 UCP600의 제14조로부터 직접 도출되며, 제18조이하의 여러 규정들에서 수리가 가능한 서류와 거절 될 수 있는 서류들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sup>101)</sup>

#### (4) 1차상품(Commodity)거래

제조물매매와 달리 거래가 연속되어 있고 가격변동이 심한 1차상품매매에서는 본질적 위반을 판단함에 있어 특별한 기준이 적용될 것이다.<sup>102)</sup> 일차상품시장의 특성은 대부분의 상품이 거래소(exchange)와 검사기관에 의해 원산지, 등급, 기준이 되는 품질 및 인도월 등이 표준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또한 이 시장에서는 흔히 화물이 운송 중에 연속적으로 여러차례 전매되는데<sup>103)</sup> 중간상들은 실물이 아닌 표준화된 서류로 거래하므로 무고장서류의 적기인도가 항상 계약에서 본질적인 요소가 된다.<sup>104)</sup> 따라서 협약의 제48조 (1)에 정한 매도인의 추완권은 1차상품거래에서는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거래에서는 매도인은 특히 완벽한 서류제공만이 분쟁을 막는 길이다.<sup>105)</sup> 다만 서류매매에 관심이 있는 중간 매수인이 아니라 실제로 물품을 인수하게 되는 매수인은 실수요자의 입장이므로 서류불일치만을 이유로 계약해제를 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 3. 손해배상청구권

매수인이 첫번째 부적합한 서류의 교부로 인해 손해를 입었고 이것이 두 번째 적합한 서류의 교부에 의해서도 제거될 수 없다면 제3문에 따라 매수인은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유한 다.<sup>106)</sup> 이 손해배상청구권은 부적합한 서류의 교부가 계약위반을 구성하기 때문에 제45조(1)(b)에 기하여 인정된다.<sup>107)</sup> 이에 따라 매수인은 협약의 제74조 내지 77조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34조 제3문은 매수인이 계약에 적합한 서류를 수령하였다고 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실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다. 손해는 예를 들어 부적합한 서류의 검사에 지불한 비용이나

101) Ingeborg Schwenzer, op.cit., p.806.

102) CISG Advisory Council Opinion No.5, para. 4.17.

103) Incoterms 2010, Introduction, 9, String Sales.

104) UNIDROIT Principles 2004, Art 7.3.1, Official Comment 3.b.; Michael Bridge, The Sale of Goods, Oxford 1997, p. 155.

105) CISG Advisory Council Opinion No.5, para. 4.17.

106) CISG 제34조 3문.

107) 김이수, 전계논문, p.242.

반송비용을 들 수 있다. 매도인의 물품발송통지에 따라 이미 매수인이 계약을 체결했으나 부적합한 서류를 수령한 후 취소할 수 없는 경우도 상정할 수 있다.<sup>108)</sup>

또한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본래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매수인에게 발생한 손해로서 사후적 하자보완으로 제거될 수 없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sup>109)</sup>

#### 4. 하자서류 지유청구권

협약의 제46조는 매수인의 이행청구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대체로 물품의 부적합인 경우 대체품의 인도를 요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겠으나 서류가 미비되었거나 제공된 서류의 계약적합성이 결여된 경우에도 제46조 1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치유청구권이 허용되는 것으로 이해된다.<sup>110)</sup> 치유청구권은 문제의 부적합이 본질적인 계약위반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으며 서류상의 경미한 하자의 경우에도 인정된다. 서류의 치유는 간단한 물리적 행위나 서류의 교체로서 가능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서류의 회수나 대체서류의 제공에 그리 큰 비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해 사안의 전체적인 사정으로 보아 이러한 치유가 불합리한 경우에는 치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V. 결론

영국과 함께 협약에의 가입을 미루어오던 일본에서도 2009년 8월 1일자로 협약이 발효됨으로써 영국을 제외한 우리의 주요 교역상대국이 모두 협약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향후 한미, 한중, 한일간 거래에 협약이 적용될 사안은 계속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결과는 협약과 무역관습에 대한 법리적 해석을 통해 국제물품매매를 담당하는 무역실무자들로 하여금 협약과 무역관습에 규정된 서류교부의무의 이행기준과 원칙, 위반시의 법적 효과 등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를 제고시키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은 서류교부의무와 관련하여 제30조와 34조에 각각 물품관련서류를 교부할 의무 및 서류교부의무의 이행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들 의무의 이행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의 국제거래관습인 Incoterms와 UCP에 기반을 둬으로써 기존의 거래질서를 수용

108) Ibid.

109) 협약 제48조 제1항 제2문.

110) 협약 제46조 제1항과 제3항 참조(윤동희, 전제논문 p.110. 참조)

하고 조화를 이루고 있다.

Incoterms는 모든 조건에서 필수서류로 상업송장을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EXW조건을 제외한 각 조건별로 운송특성에 따라 매도인이 제공해야 할 운송서류와 기타 매수인이 수입 통관이나 물품정보로서 필요로 하는 부대서류들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금결제 방식으로 신용장이 이용될 경우 서류의 종류와 통수, 각 서류의 적합성요건, 서류제시장소 및 제시기일 등이 신용장조건으로 지정되기 때문에 서류교부의무의 내용이 더욱 분명해진다.

매도인의 서류교부의무의 위반은 그 위반의 경중에 따라 효과가 달라진다. 전통적으로 영국을 중심으로 발달해온 서류매매 관습에서는 서류의 계약적합성에 대하여 엄격한 입장을 취한 반면에 협약에서는 제25조에 규정된 ‘본질적 위반’의 요건을 갖출 때에만 매수인의 계약해제권을 인정하고 있다.

기존의 판례와 통설을 볼 때, 매도인의 서류교부의무의 위반이 매수인에게 계약해제권을 부여하는 본질적 위반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에서 매수인이 기대했던 권리를 박탈했는지의 실질적 피해정도, 구매목적, 매수인 자신의 치유가능성 등 상업적 고려를 하고 있다. 또한 불일치서류의 종류, 서류매매계약여부, 대금결제방식, 거래상품의 특성 등도 영향을 주게 된다.

이처럼 서류교부의무위반에 의한 계약해제권을 ‘본질적 위반’시로 제한하고 있고 매도인의 서류치유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것은 협약의 기본정신이 계약유지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협약의 기본원칙은 서류일치의 엄격성을 고수하고자 하는 영국의 계약법 및 신용장원칙과의 충돌을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는 CISG자문위원회가 제시한 바와 같이 매도인의 서류교부의무의 위반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협약의 적용에 있어 각기 다른 거래상황을 구분하여 판단함으로써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국제물품매매에서 매도인의 서류교부의무는 기본적으로 가능한 엄격이행의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오늘날 일반적인 국제거래형태인 서류매매계약에서는 매수인은 서류의 제공에 대응하여 대금을 지불해야한다. 매수인이 물품의 물리적 인도에 관심이 있다 하더라도 서류는 유일한 정보원이고 물품을 검사함이 없이는 서류상의 결함에 의해 표시되는 피해의 심각성을 평가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선적서류를 제시받는 매수인은 그것들이 인수할만한지를 서류만을 근거로 판단해야 하며 통상 그 단계에서는 검사해볼 만한 물품을 갖고 있지 않다. 즉 서류의 불일치성이 어떤 것이든 그것에 대해 평가나 증명이 어려운 매수인의 입장이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CISG하에서 서류교부의무가 신용장하에서와 비신용장하에서의 하자인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게 되면 역시 혼란과 불확실성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서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국제물품매매의 특성상 거래의 안정성과 계약의 엄격한 이행, 신용장관습과의 조화 등을 고려해볼 때도 협약의 적용에 있어 기본적으로는 '서류교부의무의 엄격한 이행' 원칙이 준수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렇게 되면 CIF, FOB계약 등 해상송부매매를 발전시켜오는 과정에서 서류매매에 대한 엄격이행원칙을 확립해 온 영국의 매매법원칙과도 조화를 이룰 수 있고 나아가 협약이 통일적인 국제물품매매법으로서 기능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최근 국제무역의 대금결제방식이 O/A, T/T 등과 같은 송금방식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에는 이러한 비신용장결제방식에서의 서류의 적합성에 대한 후속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구종순, 허은숙, 「무역결제」, 박영사, 2006.
- 김이수,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주석서“, 「법학연구」, 제8권, 2001.
- 김진우, “매수인의 계약해제권-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CISG) 제49조를 중심으로”, 「통상법률」, 2008-12.
- 대한상공회의소, 「인코텀즈(INCOTERMS)2010」, 2010.
- 법무부,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 해설」, 2005.
- 석광현,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CISG)상의 본질적 계약위반“, 「법학논총」, 제23집, 제2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06.
- 안강현, 「국제거래법」, 박영사, 2008.
- 오석웅, “CISG에 있어서 본질적 계약위반과 매수인의 계약해제권”, 「법학연구」 제22집, 2006.
- 오세창, Incoterms 2000의 실무적 해설, 「삼영사」, 2007.
- 오원석, 하강현, 「국제물품매매법」, 박영사, 2004.
- 윤동희, 「CISG상 매도인의 물품인도의무에 따른 운송서류의 적합성에 관한 연구: 선하증권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 이기수 · 신창섭, 「국제거래법」, 제3판, 세창출판사, 2005.
- 이천수,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상 매도인의 의무에 관한 연구”, 「산업경제연구」, 제 15권 2호, 한국산업경제학회, 2002.
- 임흥근, 이태희,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상의 제문제」, 지원, 1991.
- 존 오. 혼놀드저, 오원석 역, 「UN 통일매매법」, 삼영사, 2004.
- 최준선, 「국제거래법」, 제5판, 삼영사, 2005.
- 한규식, 국제물품매매법(CISG)의 무역관습수용에 관한 고찰, 「무역학회지」, 제22권 1호, 1997.
- 허은숙, “해상송부매매에서 해상운송장의 인도증명서류로서의 적합성, 「해운물류연구」, 제26권 제2호, 2010, 6.
- 허해관, “해상송부매매에서 국제매매협약상 매도인의 서류적합의무에 관한 일고찰- 선하증권을 중심으로, 「한국무역상무학회지」, 제37권, 2008, 2.
- Bijl Maartje, “Fundamental Breach in Documentary Sales Contracts, The Doctrine of Strict Compliance with the Underlying Sales Contract”, *European Journal of Commercial Contract Law* , 1/2009.
- Bridge Michael G. , *The sale of goods*, Oxford University Press US, 1998.

- CISG Advisory Council, "CISG Advisory Council Opinion No.5, The buyer's right to avoid the contract in case of non-conforming goods or documents, *Nordic Journal of Commercial Law*, 2005, #2.
- Huber P., Alastair Mullis, *The CISG: a new textbook for students and practitioners*, Sellier. European Law Publ., 2007.
- Koji Takahashi, "Right to Terminate (Avoid) International Sales of Commodities", *Journal of Business Law*, Sweet & Maxwell, March 2003.
- Koneru P. , 'The International Interpretation of the UN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An Approach Based on General Principles', *Minnesota Journal of Global Trade* 120. 6. 1997.
- Mullis, Alastair, "Avoidance for Breach under the Vienna Convention; A Critical Analysis of Some of the Early Cases."(Andreas & Jarborg eds., *Anglo-Swedish Studies in Law*, Lustus Forlag, 1998.
- Schlechtriem Peter, "The Seller's Obligations under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Galston & Smit ed., *International Sales: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Matthew Bender, 1984. Ch. 6, pages 6-1 to 6-35).
- Schwenzer Ingeborg, 'The Danger of Domestic Preconceived Views with Respect to the Uniform Interpretation of the CISG: The Question of Avoidance in the Case of Nonconforming Goods and Documents', 36, *VUWLR*, 2005.
- Sonja Kruisinga, "Non-conformity in the 1980 UN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 a uniform concept?," Intersentia nv, 2004.
- Todd, Paul, *Modern Bills of Lading and Banker's Documentary Credits*, 2nd., Lloyd's of London Press, 1993.
- Wilson, John F., *Carriage of Goods by Sea*, Fitman Publishing., 1993.
- <http://cisgw3.law.pace.edu/cases/990604c1.html>
- <http://cisgw3.law.pace.edu/cases950208g1.html>
- <http://cisgw3.law.pace.edu/cases/060900c4.html>
- <http://cisgw3.law.pace.edu/cases/050525c1.html>
- [http://www.UNCITRAL.org/pdf/english/clout/CISG\\_second\\_edition.pdf](http://www.UNCITRAL.org/pdf/english/clout/CISG_second_edition.pdf)

## ABSTRACT

## A Study on the Seller's Obligation to Hand over Documents under the CISG

Eun-Sook Huh\*

This paper examines the seller's obligation to deliver documents conforming to the terms of the sales contract as set forth in articles 30 and 34 of the CISG. Article 30 obliges the seller to hand over documents relating to the goods. This obligation to hand over documents is further elaborated in article 34. According to article 34, the documents must be tendered at the time and place, and in the form, required by the contract. If the seller has delivered non-conforming documents before the agreed time, he has the right to remedy the defects if this would not cause the buyer unreasonable inconvenience or expense. However, the buyer can claim any damages suffered despite the seller's remedy.

Specific emphasis is placed on the interplay between the CISG and Incoterms. Incoterms contain detailed rules governing the obligations of the seller to provide for documents. Incoterms constitute international trade usage under articles 9(1) and 9(2) CISG and supplement construction of CISG with UCP under L/C transaction.

In the event of failure by seller to deliver the necessary documents, the buyer has certain remedies available, such as the right to claim damages, the right to demand specific performance, and the right to repair. Furthermore, the failure to deliver the required documents under contract constitute a fundamental breach of the underlying sales contract as defined by article 25 of the CISG by the seller, and thereby enable the buyer to avoid the contract entirely article 49. However, it is stressed that since one of the main principles of the CISG is the preservation of the contract, the avoidance of the contract should remain a remedy of last resort.

**Key Words** : CISG, article 30, article 34, Incoterms, documents, seller's obligation, remedies, article 25

---

\* Professor, College of Business, Konyang University